



두엄누리회보 제42호

2006년11월30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제7회 흙의날 기념식 및 제10회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

올해로 7회를 맞은 흙의 날과 10회를 맞이한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은 박흥수 농림부장관과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과, 이연창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농민신문사와 한국토양비료학회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박 흥수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농업 환경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농약비료 사용량을 현재 수준보다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지원할 것이며 이에 농민이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에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하여 치사를 통해 “계속 불거지는 중국산 유해농산물의 파장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안전한 먹을거리로 향하게 했다”면서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흙

을 다시금 양질의 흙으로 만들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경쟁력을 기르고, 흙살리기에 동참하는 농업인이 늘어나도록 제반 지원 또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영 농특위원장은 “흙이 살아야 물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깨끗해지며,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져 좋은 세상이 된다”며 “무엇보다 농촌환경을 살려 선진국처럼 쾌적한 농촌이 되는 데 일조하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토양 및 환경 전문가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환경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과학적 영농 실천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지역농협의 흙살리기 사례발표도 있었다

대다수의 발표 자료에서 축산분뇨 퇴비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내 염류 집적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친환경농업 근본 취지와는 달리 화학비료의 필요성을 은근히 주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다. 인산의 경우는 축분퇴비 사용 시 화학비료에 비해 오히려 매우 높은 양분집적 농도를 나타냈다고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질문시간을 통해 퇴비의 경우 잘 발효시킨 퇴비와 그렇지 않은 퇴비와의 효능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집적된 염류(인)를 가용성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도 있고 또 퇴비가 인산축적을 가속화 한다는 것은

그대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증거이니 만큼 자료 발표 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 퇴비사용 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 원예농협의 흙 살리기 사례발표에서는 이미 보급된 간이 토양 검정기를 통해 토양진단을 한 후 영류집적으로 문제가 된 경작지를 되살린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미 농협을 통해 보급된 토양 검정기는 전국에 300대가 넘으며 이를 활용한 시비처방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퇴비생산업체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각자 자사제품에 맞는 토양별 작물별 시비처방을 마련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년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 추진계획 안내

이미 공문으로 전달된바와 같이 2007년도 유기질 비료보조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올해 농협중앙회는 99년부터 실시해온 보조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감사원의 지적 및 권고 사항으로 몇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7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2006년도	2007년도
비료공급기관	○지역농협, 퇴비장을 보유한 지역축협, 인삼조합, 영연초조합	○퇴비장을 보유한 지역축협 제외
공급업체선정기준	○년간매출액 퇴비:1억이상 유기질:3억이상	○매출실적 기준 완전 폐지
공급가격	○공급가격결정	○유기질비료,

결정	- 유기질 : 본부, 지역본부 - 퇴비: 지역조합	퇴비: 본부, 지역본부(※ 지역조합 제외)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유해성분초과시 -영업정지 1개월:1년 -영업정지 2개월 이상:2년 ○주성분·유해성분 등을 중복위반:3년	○유해성분초과시:3년 ○주성분·유해성분 등을 중복 위반시:3년

비료공급기관은 퇴비장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경우 농업인의 구매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체 생산되는 퇴비를 우선공급 하는 폐단이 있어 공급기관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였다.

납품업체 선정기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는 애초 목적은 일정기간 시중판매를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는 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왜 보조사업에 참여 제한을 두느냐는 신규업체의 불만으로 완전 폐지되게 되었다. 대신 품질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 참여 등록 업체 중 농업인 주문량이 전국 집계 300톤 미만일 경우는 계약에서 제외 시키기로 하였다.

우리에게 제일 민감한 비료공급가격 결정은 올해 일선조합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결과 농업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선조합 구매 직원에 의해 업체가 제한적으로 선정되거나 제품가격이 획일화 되어 저질 제품의 공급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역조합은 제외시키고 지역 본부에서 시담 후 운반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지역조합에서 직접 운반을 책임지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약정을 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이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가격의 변동이 있을 시는 유통질서를 문란 시키는 업체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저질저가 제품을 지역본부담당자의 눈을 속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후 추가 약정을 통해 금액을 낮추는 행위는 농업인과 지역조합 담당자간에 검은 거래의 단초가 되며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려는 많은 업체들에게는 올바른 생산 활동 의지를 꺾어놓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업체가 감시자가 되어 발견 즉시 협회나 농협중앙회로 고발조치하여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길 바라며 각 업체 스스로가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자재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의 일정

11월17일부터 각 지역 본부를 통해 접수하기 시작한 참여 신청서 제출이 이달 말까지 완료되면 중앙회는 이를 집계하여 전국 지역조합을 통하여 대상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계시판 등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알리고 업체별 신청량을 받는다.

주문 신청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12월중에 각 지역 본부별로 표준계약서 작성에 들어간다. 이때 앞선 말한 신청량이 300톤 미만인 업체는 계약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은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제조원가표를 근거로 제품가격이 결정되며 이때 각자 제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입원료명 표기에 대하여

비료 생산업 등록 시 투입원료명과 그 배합비율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은 속수무책이다.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 외에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만 처벌할 뿐 공정규격 내에서 허용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폐기물을 쓰고도 유박이라고 표기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식품공장 폐기물(장 박류 나 콩비지 등)이나 제약회사 폐기물(마이신 박 등)을 사용하면서 유박을 사용한다고 표기하는 예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는 사용원료 명 표기 중 유박이나 기타 등으로 표기된 원료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해 농협납품 지정업체 회원사들에게는 생산업등록증을 연말 까지 변경하도록 전달한 바 있다. 또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하면서도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원료에 포함시키면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숨기고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였고 친환경자재로 사용 가능한 제오라이트, 버뮤큐라이트 등은 공정규격 상에 사용가능한 물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광물질이라 하여 기타로 표기하거나 아예 숨기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는 사용원료의 투명성을 높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며 납품 계약시 적정금액 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져 유기비료조합에서도 농협중앙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다.

하지만 막상 실제 사용하는 원료를 그대로 등록하려 하여도 일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행정부서에서는 제오라이트나 버뮤큐라이트 등 광물질의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때 맞춰 비료관리법은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주성분 및 유해성분 기준 등으로는 농약 등 부적합한 물질을 혼합한 불량비료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없어 비료생산업 등록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한 비료에 대해서도 양도·진열·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껏 아무 이상 없이

일부 광물질 자재를 사용하던 업체는 졸지에 단속대상업체로 전락 하게 된다.

관계자의 말대로 그럼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정규격에 퇴비의 보증 성분인 유기물함량을 기준치이상 보증하는 한도 내에서 발효촉진제 또는 수분조절재로 일부 사용하는 자재를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또 유기질 비료에서 유기복합비료에 사용을 허용한 랑베나이트나, 구아노포스페이트도 엄연한 광물질임에도 이를 유기질 비료자재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퇴비에 수분조절이나 발효촉진을 위해 일부 소량이 원료에 혼합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사용 불가능한 물질이 아니라면 빨리 사용가능 유무를 정리하여 발표하여 사용원료 표기를 통한 원재료의 투명성을 높여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06년 협회 신규가입 및
신규 농협 지정업체 명단**

경기	청미바이오(주)	이영규	674-8130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219-1
경기	(주)미래환경산업	서영근	641-2121	경기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120-3
경기	(주)임승농산	음수연	572-1133	남양주시 진접면546-9
경기	구성비료	조승희	011-359-4456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368
강원	두루미영농	박종선	455-9799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687-1
충북	주식회사농경	구창희	537-1425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무리 275-3
충북	다원농장	한만혁	856-3940	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치

				리 564-1
전북	케이지케미칼(주)	곽재선, 이정섭	02)2680-4267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580-2
전북	아주산업	김태민	537-7026	전북 정읍시 웅동면 칠석리 488
전북	양지농장	정영호	537-5465	전북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490
전북	영농조합부성	오재만	291-2929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541-1
전남	삼원바이오	박 현	532-8804	전남 해남군 화산면 울동리 109-9
전남	씨알유기농	김인술	473-3347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912-7
전남	동성비료	이경엽	323-9628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41-1
전남	부부농장	정택용	393-1973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200-1
경북	(주)풍산비료	이운선	842-7647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892
경북	이스트원케이칼(주)	정종완	774-2706	경북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861-3
경북	(주)이레축산	박형록	673-6970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45
경북	(주)태원농산	오성환	531-2153	경북 상주시 화동면 신촌리 26-1
경북	각남위탁영농합명회사	이영동	372-5550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199-1
경남	성은비료	김경순	342-8460~1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828
경남	(주)한국피를자재	이태송	962-1570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406
경남	주식회사피마	김영수	831-2857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88-1

신규 협회가입 및 농협 납품업체 신규지정을 축하드리며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